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 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제갈공명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AP915)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5. 2. 12.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 2. 23.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귀하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주요 투자대상

- 채권모투자신탁(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80% 이하
- 주식모투자신탁(트러스톤증권투자신탁[주식]) : 50% 미만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55%) + (KOSPI지수×40%) + (Call금리×5%)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미만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40%이상 투자합니다. 그 주식투자비율은 모투자신탁의 해당 주식 보유비율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일의 실질 국내주식보유비율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1~1.5년 수준인 트러스톤중기 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과 듀레이션 3년 수준인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채권모투자신탁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트러스톤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듀레이션 | 1~1.5년 | 3년 |

(1) 듀레이션 전략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2.7년입니다.)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상대가치투자(Relative Value Trading)

상대가치투자는 시장 기대의 쓸림 현상이 나타날 때 발생하는 채권 금리의 왜곡 현상을 활용하는 투자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채권에 투자하여 추가수익을 달성합니다.

① 수익률곡선 전략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② 스프레드 매매

두 채권간의 금리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가 평균치를 상당폭 벗어날 때 평균치에 다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채권을 매수하고 가격이 높은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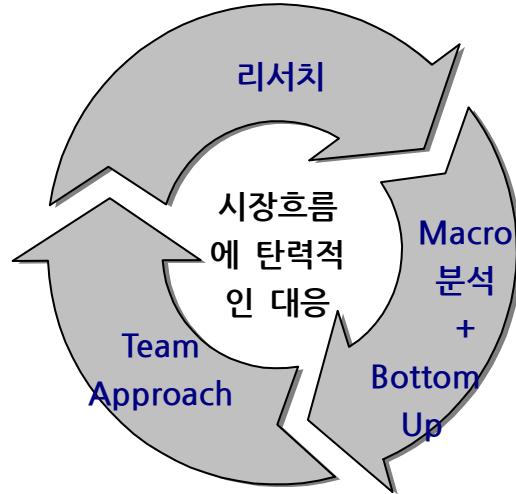
- 120일 이내 이동평균 스프레드와 %rank 수치들을 파악하여 특정 만기 구간, 섹터 혹은 종목의 과매도, 과매수 국면을 포착합니다.
- 단기차트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분석 기간을 확장하고 펀더멘털, 금융환경, 수급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3) 개별종목분석을 통해 저평가 종목 발굴 및 차익거래 기회 등을 통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 주식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치주 또는 성장주 일방에 편향되지 않고, 시장흐름에 유연한 자세로 운용하고,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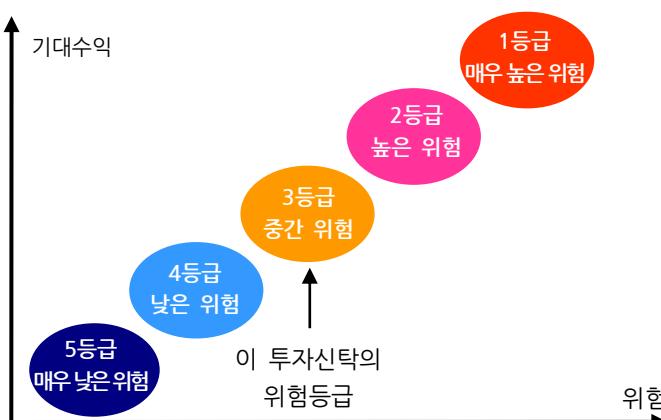
또한 고성장 산업군 내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 펀더멘탈과 무관한 주가 변동은 초과수익의 기회로 포착하여 투자합니다.



3. 주요투자위험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주요 운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 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하를 투자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50% 미만을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형]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단위 : 억원, 개 / 기준일 : 2015. 1. 31.)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정인기 | 1971년 | 주식 운용 책임 운용역 (상무) | 8 | 9,993 |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97.07 ~ 02.08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02.09 ~ 04.11 신영투자신탁운용 투자전략팀 04.11 ~ 09.12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운용팀 10.01 ~ 11.05 대우증권 Prop. Trading 부 11.05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안홍익 | 1976년 | 주식 운용 부책임 운용역 (부장) | 18 | 13,464 | 학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경력 03.01~05.06 SK증권 리서치 애널리스트 05.06~07.05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센터애널리스트 07.05~09.04 BNP PARIBAS 증권 애널리스트 09.05~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3본부 3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문성호 | 1977년 | 채권 운용 책임 운용역 (차장) | 18 | 11,928 |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수료 경력 03.12 ~ 04.09 동부증권 06.12 ~ 08.06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 08.06 ~ 10.05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0.06 ~ 12.03 산은자산운용 채권운용1팀 12.03 ~ 14.03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1팀 14.04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채권운용팀과 주식운용 3 본부 3 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 C | Ce | S-P |
|-------|------------------------------------------------------------------------------------------------------------------------------------|-------|-------|
| 펀드코드 | AP916 | AP917 | AP918 |
|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 구분 | 집합투자 업자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사무관리 회사 | 기타비용 | 총보수 비용 | 합성보수 비용 | 증권거래 비용 |
|------|----------|-------|-------|---------|-------|--------|---------|---------|
| C | 0.260 | 0.520 | 0.015 | 0.015 | 0.017 | 0.827 | 0.827 | 0.783 |
| Ce | 0.260 | 0.260 | 0.015 | 0.015 | 0.017 | 0.567 | 0.567 | 0.783 |
| S-T | 0.260 | 0.230 | 0.015 | 0.015 | 0.017 | 0.537 | 0.537 | 0.783 |
| 지급시기 | 매 3개월 후급 | | |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 구분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C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87 | 271 | 472 | 1,04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 87 | 271 | 472 | 1,049 |
| 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60 | 187 | 325 | 728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 60 | 187 | 325 | 728 |
| S-T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56 | 177 | 308 | 691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 56 | 177 | 308 | 691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
| 가입자격 | <p>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p>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매년 6.30. 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p> |
| 가입기간 | 2015.12.31.까지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2015. 12. 30. 기준시간 이전까지 신규 신청(자금 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저축 계약기간 | <p>10년 이상</p> <p>*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합니다.</p> |
| 가입한도 | 연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세제혜택 |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단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 양도하거나 원금 · 이자 · 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감면세액 추징 | <p>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추징세액 증가)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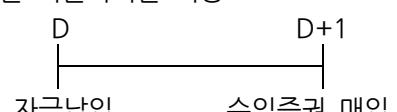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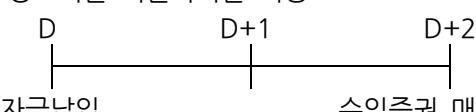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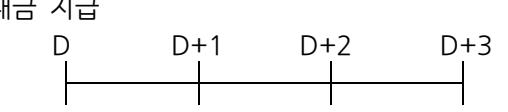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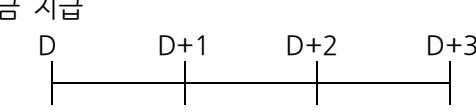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후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 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대금 지급  |

※ 단,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